

2024년 「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」 권역별 운영기관 공모

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권역별 예비 및 현직교원의 발명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2024년 「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」 운영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한국발명진흥회장

1. 공모 개요

- 사업 명칭 : 2024년 ‘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’
 - 추진 목적
 - 권역별 예비 및 현직교원(발명교육 인재)의 발명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발명인증 교원 양성(개발)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(센터) 공모
 - 선정 규모 : 3개 기관
 - 사업 기간 : 2024. (선정일) ~ 2024.12.10.
 - 지원 예산 : 기관당 40백만원(부가세 포함)
 - 신청 자격
 -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 중 권역별 지역 소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(2개 이상 기관의 컨소시엄은 불가)
- ※ 상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산학협력단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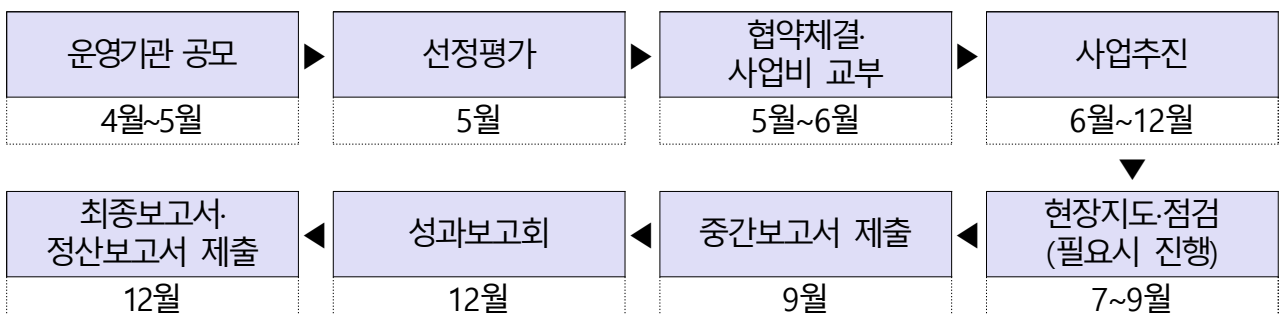
< 신청 가능 권역 (담당 지역) >

권역 구분	소재 지역(담당 지역)	비고
중부권	충북, 충남, 세종, 대전	1개 기관 선정
영남권	경북, 경남, 대구, 울산, 부산	1개 기관 선정
호남권	전북, 전남, 광주, 제주	1개 기관 선정

2. 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과업 내용

- ① **(예비교원 강좌운영)** 예비교원의 발명·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향후 학교현장 적용가능 하도록 발명교육 강좌 개설·운영(4학점 이상)
 - 재학생(예비교원) 대상 발명교육 정규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
 - * 발명교사인증제 '2급'에 한정하여, C학점 이상 1학점은 15시간 연수실적으로 인정
- ② **(현직교원 직무연수)** 최신 교육 트렌드에 적합하고 발명교사 양성 교육을 포함하는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(60시간 이상)
 - 최신 발명교육 동향 및 AI 등 시의성이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
 - 오프라인 연수와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* 병행 운영 가능
 - * ZOOM 등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연수 등
 - 학교현장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개설 시기는 자율적으로 운영
 - 현장에서 취득한 경험을 공유·확산할 수 있도록 권역 내 발명인증 교사의 직무연수 강사 참여 권장
- ③ **(발명교사인증제 지원)** '발명교육법'에 근거한 발명교사인증제도의 권역(담당 지역)별 고사장 제공 등 평가시험 운영 지원
 - * '24년 발명교사인증제 세부 추진일정은 선정기관에 개별 안내
- ④ **(발명교원 네트워킹)** 권역별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원 상호 정보공유, 양성, 활용을 위한 자율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
 - 협력교원 POOL을 구축하여 권역별 관계자들 소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,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참여 등 선순환 구조 구축

※ (참고사항) 사업 추진 절차



3. 선정 절차 및 방법

□ 선정심사 절차

- 1차 주관기관 서류 검토 : 제안 기관 서류 제출, 신청자격 적격 여부, 과업내용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제출서류 검토
 - * 기한 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만 심사·선정(접수번호 개별공지)
 - ※ 미신청 권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대한 재공모 진행
- 2차 평가위원회 심사 : 주관기관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선정 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심사
 - * 발표평가[대면 또는 원격회의]를 통해 선정하며, 상세일정은 개별 공지

□ 선정평가 기준

평가 영역	평가 요소		배점
사업 이해도 및 비전	• 사업 이해도 - 사업 관련 용어, 추진 목표 이해 여부 등 • 기관의 발명교원 교육 의지 및 비전 - 유사 발명교원 교육 추진이력 및 확대 방안		20
사업 조직 및 참여인력 역량	• 사업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- 추진 조직의 구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 배정 등 • 사업 참여인력의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- 사업 수행 인력의 업무 관련성, 전문성 등		20
사업계획의 적절성	1) 예비교원 강좌운영 프로그램 - 4학점 이상 강좌운영 편성 여부 - 체계적인 강좌운영 방안 등	15	40
	2) 현직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 -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편성 여부 - 구체적인 직무연수 방안 등	15	
	3) 발명교사인증제 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- 발명교사인증제 지원 내용 편성 여부 - 발명교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방안 등	10	
사업비 집행계획	• 과업별 예산 배분 및 사용계획의 적절성 - 과업별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• 사업비 편성 내용의 합리성 - 사업비 편성 기준에 적합한 예산의 산출 등		20
합 계			100

□ 심사결과 발표

- 심사결과는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

4. 신청방법 및 제출처

- 접수기간 : 2024.04.26.(금)~2024.05.16.(목) 17:00까지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제출공문 각 1부
- 접수방법 : 한국발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(injun@kipa.org)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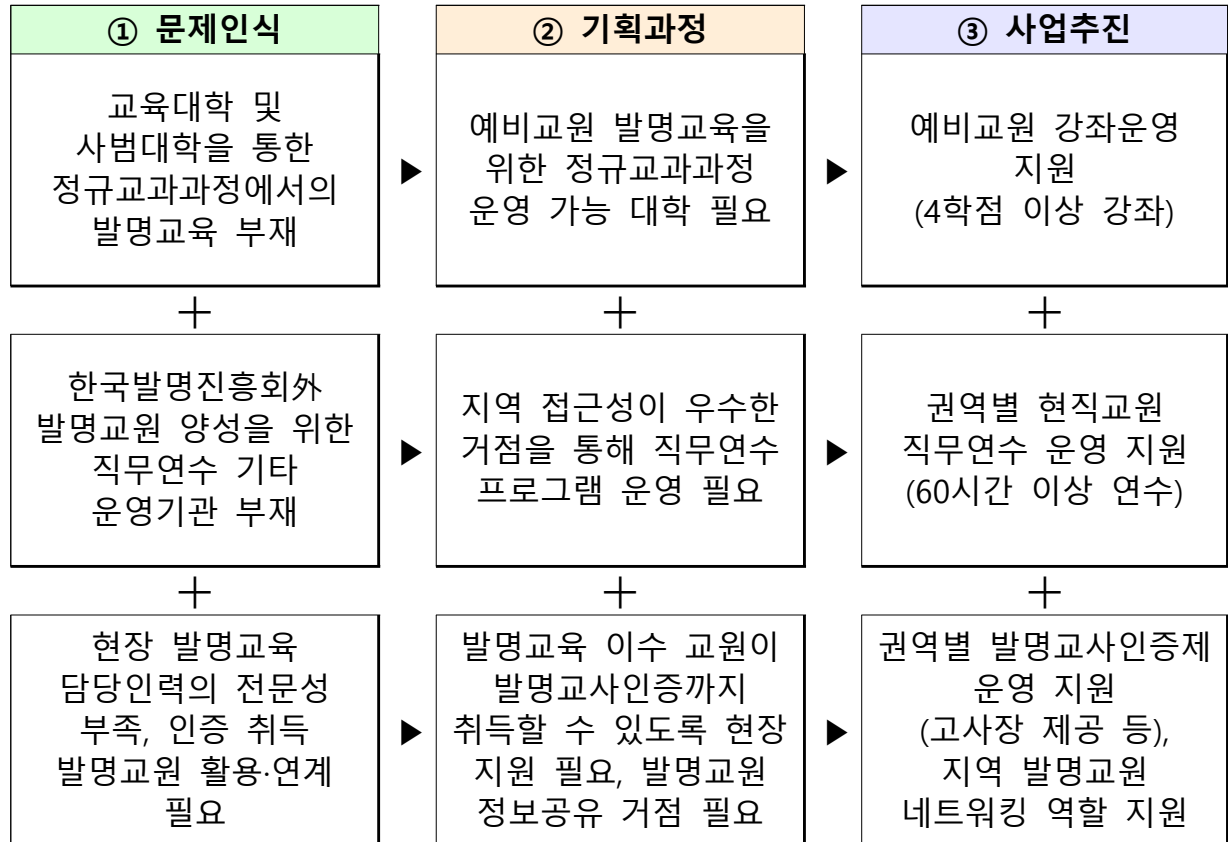
[신청 시 유의사항]

- 이메일로만 접수하며, 우편 및 현장방문 접수 등은 불가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[붙임]서식과 가이드에 따라 작성
- [붙임]서식에 포함된 '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' 제출 필수
- 자료를 제출한 신청기관에는 개별 접수번호 회신(접수확인)
- 제출서류(사업계획서 등)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 기관 부담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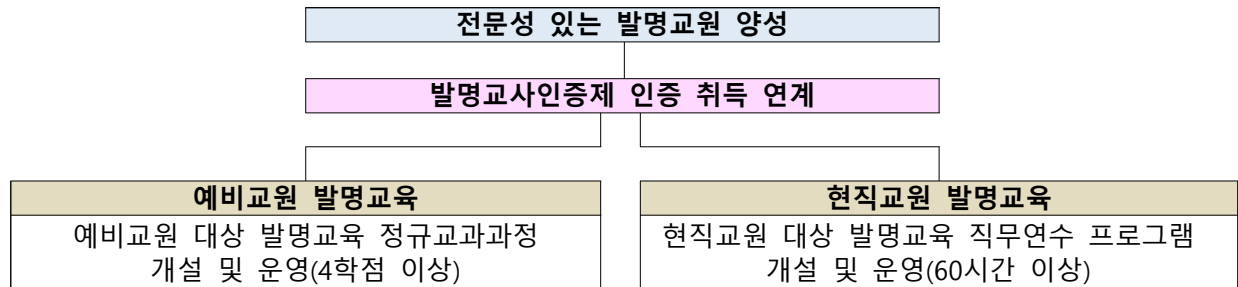
- 사업문의 :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장인준 과장
(연락처 : 02-3459-2954, injun@kipa.org)

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

○ (시범사업 설계과정)



- (운영 목표) 권역별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교대·사대 중 **발명교원 양성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·선정**하여 ①예비 및 현직교원 대상 발명교육을 운영하고, 이와 연계된 ②발명교사 인증을 취득한 전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발명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저변 확대



* 권역별 발명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(협력교원 POOL 등 운영)

서식

「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」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신청 권역	중부권(), 영남권(), 호남권()			접수번호	
2024년 「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」 운영기관 신청서					
운영기관	기관명		대표자명(성명)		
	주 소				
총괄책임자	소 속		직 위		
	성명		휴대폰		
	연락처		E-mail		
실무책임자	소 속		직 위		
	성명		휴대폰		
	연락처		E-mail		
당해 사업비 (단위: 백만원)	국고보조금	40백만원	대응자금	백만원	
	합계	백만원			
당해사업기간		2024. (선정일) ~ 2024. 12. 10.			
본 운영기관은 「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」 운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, 본 사업 계획이 승인될 경우 귀 기관이 안내하는 운영방안과 일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. 2024년 5월 〇〇일 운영기관장 : (직인) 총괄책임자 : (서명 또는 날인)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					

※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는 동일인이어도 무방함

2024년 「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」 사업계획서

2024년 5월

운영기관명

- 목 차 -

I. 기관 현황	
1. 운영기관 현황	
2. 사업수행 인력 현황	
II. 2024년 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운영계획	
1. 예비교사 대상 발명교육 정규강좌 개설 및 운영	
2. 현직교사 대상 발명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	
3. 발명교사인증제 평가시험 지원	
4. (자율)권역 내 발명교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	
5. 추진 일정	
III. 사업비 집행 계획	
1. 총사업비 구성 계획	
2. 신청기관의 대응투자 계획 사업비	
3. 당해년도 비목별 사업비 집행 계획	

※ 상기 목차는 운영기관의 특성 및 제안내용에 맞게 조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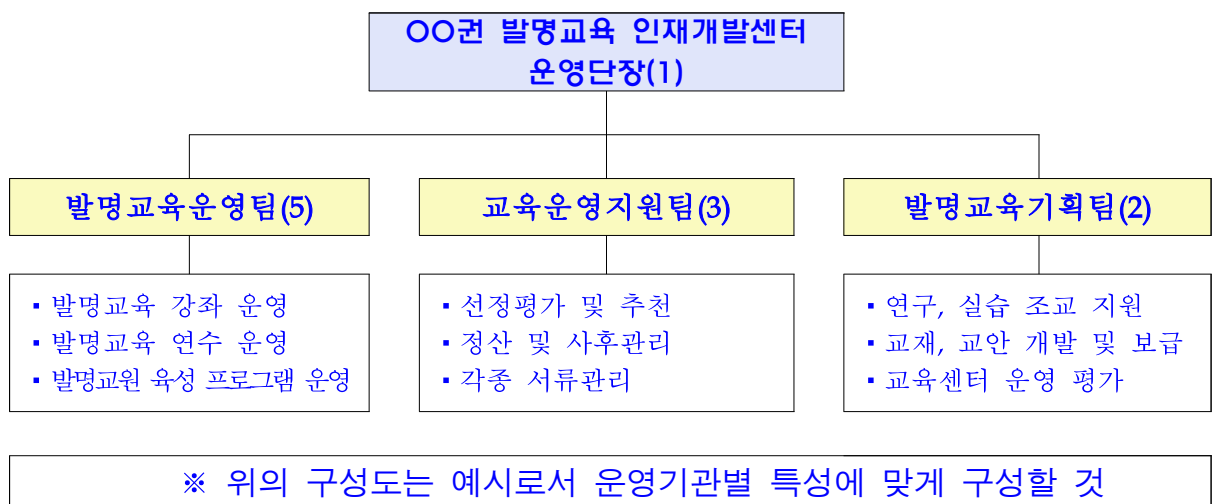
I. 기관 현황

1. 운영기관 현황

1-1. 운영기관 일반

기	관	명		대표자명(성명)	
주		소			
전	화	번	호		
설	립	년	도	년	월
<u>주요연혁</u> 					

1-2. 추진조직 구성도 (예시)



2. 사업수행 인력 현황

2-1. 참여인원현황

※ 기초연구/자문, 교육연수 운영/자문, 운영지원 등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 (행정 인력 포함)을 기재하며, 각 참여 인력의 이력사항 2-2.~ 에 추가

구분	소속기관	성명	직위 (소속기관)	전공 및 최종학위				담당 업무내용
				학교	졸업 년도	전공	학위	
<u>총괄 책임자</u>	OO대학교	OOO	단장	OO대	2000	교육학	박사	구체적 기재
실무책임자	OO대학교	OOO	책임 연구원	OO대	2010	전기공학	석사	구체적 기재
외부위촉	OO대학교	OOO	교수	OO대	2005	전기공학	박사	구체적 기재

※ 추진조직 구성도(1-2) 상의 인력을 기재

※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는 동일인이어도 무방함

2-2. 총괄책임자

성명			생년월일		
소속			직위		전화
학력 (대학교이상)	졸업년도	학 교		전 공	학 위
해당분야 경력	19 . . . - 20 . . .				
주요실적	관련내용(해당분야관련)		참여기간 (년월~년월)	담당업무	발주기관
	(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)				

2-3. 참여 인력

성 명			생년월일		
소 속			직 위		전 화
학 력 (대학교이상)	졸업년도	학 교		전 공	학 위
해당분야 경 력	19 - 20				
주요실적	관련내용(해당분야관련)		참여기간 (년월~년월)	담당업무	발주기관
	(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)				

II. 2024년 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운영계획

1. 예비교사 대상 발명교육 정규강좌 개설 및 운영

학위 과정	개설 학기	강좌명	담당 교수	필수과목 지정여부	수강 생수	개설 학점
학부	3-2	발명교육과 실습	홍길동	전공선택	50명	2학점
대학원	2	발명과 창의성 교육	홍길동	교양필수	20명	3학점

- o 발명교육과 실습 : 세부 추진계획 기재
- o 발명과 창의성 교육 : 세부 추진계획 기재

2. 현직교사 대상 발명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
연수명	교육내용	교육시간	참가자 수	비고
발명교원 고급과정	발명교육과 실습	00시간	50명	
발명교원 심화과정	발명, 영재, 지재권	00시간	50명	

- o 연수이수학점 추진 및 적용 방안 상세히 기재
- o 각 연수프로그램별로 연수명, 연수기간, 연수인원, 연수교재, 연수 대상자 선정, 성적처리, 이수기준, 이수증 발급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
- o 각 연수프로그램별 사후관리 계획 기재

3. 발명교사인증제 평가시험 지원

☐ 평가시험 지원계획

- o 평가시험 준비 및 지원 담당 : 000 센터 000 연구원
- o 평가시험 준비사항
고사장 대관, 고사장 안내문 및 시험 응시자 스티커 출력 등 고사장 준비
- o 평가시험 당일 지원인력 풀

성 명	소속 및 직위	전화번호	메 일	역할
○○○	○○대학교 연구원	010-000-0000	○○○○@○○○.○○○	

4. (자율)권역 내 발명교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

- 협력교원 POOL 운영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기재

5. 추진 일정

일련 번호	사 업 추 진 내 용	추진 일정											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1													
2													
3													
4													
5													
6													
7													
8													
9													
10													
11													
12													
13													
14													
15													

※ 상기 표는 예시이며 운영기관 추진 일정에 맞추어 작성

Ⅲ. 사업비 집행 계획

1. 총사업비 구성 계획

(단위:원)

구 분		2024년	비고
국고보조금		40,000,000	
대응 자금	운영기관		
	기타		
	소 계		
합 계			

2. 신청기관의 대응투자 계획 사업비

- 해당 운영기관의 대응투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
- 대응투자는 의무사항은 아니며,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

현 금		(단위:천원)		
대응 투자	투자 형태	투자 금액	세부 내용	비 고

현 물		(단위:천원)		
대응 투자	투자 형태	투자 금액	세부 내용	비 고
(예) 교육공간	현물	1,000	50명 규모 강의실	임차료

3. 당해년도 비목별 사업비 집행 계획

- 사업비는 해당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되, 산출내역은 구체적인 명목과 수치를 제시
- 연구수당 : 8백만원 이내(연구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각종 인건비성 수당 중복지급 불가)
- 간접비 : 추후 상향조정 불가, 상세내역 명시, 직접비와 중복집행 불가(중복시 환수)
* 간접비는 국고보조금 지원액의 5%를 넘지 못함(200만원 이내)
- 대응자금 : 있을 경우 작성

(단위:천원)

세부비목		산출내역 (당해사업 관련내용)	국고보조금	대응자금	계
직접비					
	소 계				
간접비	관리비		1,500	-	1,500
	회계감사비	회계감사 500*1회=500	500	-	500
	소 계		2,000		
합 계					

[양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필수)

“개인정보 보호법”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「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」과 관련하여 신청 기관 및 참여인력 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, 또한 이를 사업 지원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

- 수집·이용 대상 정보 : 기관식별정보(기관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, E-mail 및 본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참여인력 개인정보 등)
- 수집·이용 목적 : 사업 지원 기관 선정, 사업지원 및 사후관리
-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본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일 후 5년간

※ 기업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- 제공항목 : 상기 기관식별정보
- 제공받는 자 : 특허청
- 제공목적 :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활용

2024년 5월 ○○일

운영기관장 :

(직인)

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

[별첨] 대응투자 협약서(예시)

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 대응투자 협약서

사 업 구 분	2024년 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
운 영 기 관	OOO

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담금 중 현금 및 현물부담금을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.

구 분			금 액(만원)
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 현금출자 금액			-
발명교육 인재개발센터 시범사업 현물출자 금액			1,000
현물 지급 내용	연 구 인 력	출 자 금 액	-
		주요출자내용	-
	교육기자재 및 재 료	출 자 금 액	190
		주요출자내용	교육기자재 10종
	토 지	출 자 금 액	-
		주요출자내용	-
	시 설 (건 물)	출 자 금 액	810
		주요출자내용	강의실 3실, 사무실 1실

2024년 5월 OO일

운영기관장 : (직인)

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

[사업비 편성 기준](제출시 삭제)

<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표 >

항목		세부항목별 산정기준	비고
① 직접비	교육 운영비	- 실습재료 구입비 - 발명교육 강좌 운영시 발생하는 재료비, 시제품제작비 등	실습재료 구입비는 실습에 필요한 당해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
		- 직무연수 운영비 - 직무연수시 소요되는 제반경비(식비, 강사료, 인쇄비 등)	실 소요액 계상
		- 여비 -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-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,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	- 위탁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,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준용 -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- 여비 사용시 출장 목적, 내용이 증빙서류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
		- 인쇄비 -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, 보고서인쇄비, 문헌복사비	조달청 인쇄기준 단가 적용
		- 전산처리비 - 컴퓨터 관련 소모품비 -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조사분석비	실 소요액 계상
		- 회의비 - 사업과 관련된 회의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	- 위탁연구기관의 회의비 규정(회의참석수당, 회의 경비, 회의장 임차료 등)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회의비 규정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 규정을 준용 -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(서명 기입)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함
		- 전문가 활용비 - 위탁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	- 위탁연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전문가 활용비 규정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 규정을 준용 -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세부기준표 제출
		- 수용비 및 수수료 -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, 공공요금, 수수료 등	실 소요액 계상
	연구 수당	-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실무인력에 대한 운영활동 경비 - 국고보조금의 20% 이내 계상(대응자금 별도)	- 센터 참여인력에게 지급 - 그 외의 참여인력은 현물대응 계상 -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인력에 대한 별도 인건비성 비용 지출 불가(단, 직무연수, 특강 강의비 제외)
	② 간접비 (5% 이내)	- 간접사업비 -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회계감사비를 계상	- 전체간접비 내에서 계상 - 외부회계사를 통한 감사보고서 필히 제출
		관리비 등	

<참고사항>

- 기자재 구입 불가
- 사업비 집행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(간이세금계산서 제외)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
-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